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385호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고시 제2013-149호, 2013.4.22.)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3. 6. 28.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」 일부개정(안)

### 1. 개정이유

건설기술인력의 1주(5일 35시간) 연속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및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3일 단위 분할교육을 2~3일 단위로 편성하여 분할교육을 활성화 하고,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건설기술자 업무공백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(안 제4조제2항)

3일 단위의 분할교육을 2~3일 단위로 편성이 가능토록 하여

## 건설기술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

- 나.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(안 제8조제1항 별표1)  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을  
건설기술자 직무교육으로 인정

### 3. 기타 참고사항

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의 정보마당  
→법령정보→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 
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(전화 : 044-201-3555,  
35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」 일부개정(안)

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주 이상의 경우 3일”를 “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일 또는 3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과목”을 “과정”으로 하고, “과목 및 내용에”를 “교육 내용에”로 한다.

제16조 후단 “2014년 12월 28일”를 “2016년 6월 27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개정 2013. 6. 28.)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

[별표 1]

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(제8조제1항 관련)

분야	근거 법령	비고
환경	「폐기물관리법」 제35조	
	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	
	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7조	
	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6조	
	중전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8조	
	「하수도법」 제67조	
	<u>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7조</u>	
안전관리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	
	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	
전기	「전기사업법」 제73조의4	
	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7조	
광업자원	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2조	
교통, 토목, 환경, 국토개발	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13조	
금속	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	
공통	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(위탁교육 포함)	공무원에 한함
	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(위탁교육 포함)	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
	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64조 및 「설계의 경제성 등 건설에 관한 시행 지침」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, 한국VE협회, 한국기술사회,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	
	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관련 의무교육	

## 비 고

1. 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(2001.12.31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제 조치)
2. 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로써 이수기간을 합산하여 2주 이상인 경우 최초교육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, 1주이상 2주 미만인 경우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3.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.
4.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1주 이상인 경우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기간은 2011년 6월 17일(고시 시행일)이후 이수한 교육기간으로 한다.

별지

[별표 2]

**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**

구분	학점인정내용		학점 가중치	이수단위	인정최고학점 (3년 기준)
	교육훈련 종류	인정사항			
수강 교육 (원격 교육 포함)	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	1. 영 제25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 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	1	수강시간	90학점
	학위과정	2. 국내외 석·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(이하 “교육”이라 한다)	10	취득학점	60학점
	외국어과정	3. 외국어(학원수강, 시험성적 등)	0.1~25	수강시간 또는 점수	30학점
	기타교육과정	4.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 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 육	1	수강시간	60학점
무 형 식 교 육	저작	1.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	10~50	건	60학점
	강의 등	2. 건설관련강의(소속업체 강의 제외)	2	강의시간	60학점
		3. 기술발표(세미나, 포럼 등)	1~10	건	60학점
	논문 등	4.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 문이나 보고서 게재	2~30	건	48학점
		5. 국내외 특허(발명 및 실용신안) 출 원 및 획득	6~60	건	60학점
		6. 신기술·신공법 제안보고서 등	2~30	건	40학점
	연수 및 OJT	7. 기업(교육 및 연구기관 등)내 건설 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	1	참여시간	12학점
	학습활동	8.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(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)	1	건	12학점
		9.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(확인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)	0.5	참여시간	18학점
		10.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	10~30	건	40학점
	심의·심사	11.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 의 또는 심사활동	1	참여시간	30학점

비 고

1. 인정사항 중 학회는 「민법」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.
2.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)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90학점 중 35학점은 수강교육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
